

<자료 소개>

1.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우리계 사건에 관련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으로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우리계는 1927년 4월 9일 비밀결사 문고를 결성하여 아나키즘을 연구하던 고병희, 조대수, 강기찬, 김형수, 고영희 등이 1929년 5월 5일에 결성한 조합이다. 이들은 아나키스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유인의 결합에 의한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그 지방의 생산기관과 교통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영위하고, 나아가 점차 범위를 넓혀 촌리연합, 면연합, 군연합, 도연합, 총연합을 결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계를 결성한 것이다. 우리계에는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도청島廳, 은행, 금융조합, 학교 등 공무원과 각종 실업가 및 기타 유지·신사들이 제주도 환상環狀 12포구 별로 총망라되었다. 우리계는 1929년 9월 각 동리洞里에 야학을 개설하여 항일민족의식과 아나키즘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며, 일본 오사카에 있던 고순흙 등이 추진하던 자주운항운동에 동참하였다. 우리계가 자주운항운동에 한참 주력하고 있을 때인 1930년 6월 고병희 등 우리계 관계자들 6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고, 이 중 15~16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고병희, 조대수, 김형수, 강기찬, 고영희, 임상옥 등 6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30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은 고병희에게 징역 5년, 조대수와 고영희에게 징역 4년, 강기찬과 김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임상옥은 무죄로 방면하였다.

2.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우리계 사건에 관련된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으로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고병희, 조대수, 고영희, 강기찬, 김형수 등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1931년 7월 14일 대구지방법복심법원에서는 아나키스트 사회 실현의 운동자금 조달 방법으로 우리계라는 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서 무죄를 언도하고, 고병희와 조대수에게 징역 3년, 고영희·강기찬·김형수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3. “고순흙이 작성한 이력서”

고순흙의 이력서로 김찬흡이 소장하고 있다. 필사본과 활자본 2종이 있는데, 내용은 서로 약간 다르다.

4. “고순흙이 작성한 자료”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가 『한국아나키즘운동사』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고순흙이 작성하여 1967년 2월 6일 최갑용에게 보낸 자료. 필사본. 여기에는 고순흙후원회 발기문, 조대수 비문, 조선노동공제회, 무정부주의자가 된 동기, 조선노동공제회 창업의 동기 및 전말, 신진회에 참가하여 활동한 사람들의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기업동맹 기선부의 유인물”

1928년 12월 일본 오사카 소재 기업동맹 기선부가 결성 취지를 밝힌 유인물. 등사본. 김찬흠이 소장하고 있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배로 가장 싸게 조선 본토(일본-인용자) 간을 오갈 것이다”라는 취지하에 1928년 12월 10일 가맹원 16명이 300원을 출자해서 결성되었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북해우선北海郵船의 제2 북해환北海丸을 전세로 빌려 1929년 1월 2일 오사카항에서 처녀항해를 하였다.

6. 「청년운동을 촉함」

고순흠이 작성한 글로, 조선노동청년당의 선언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이며, 작성 일자는 미상이다.

7. 「계약증서」

기업동맹 기선부가 1929년 5월 9일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서. 필사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순길환順吉丸 또는 다른 약 1,000톤급의 하객선荷客船으로 기업동맹 기선부가 경영하던 제주도-오사카간 항로를 계승한다는 것, 기업동맹 기선부는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의 영업권과 설비를 있는 그대로 먼저 1개년을 한도로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에 제공한다는 것, 제주도-오사카간의 승객 운임은 대인 1명 9원, 소인 1명 4원 50전 균일로 한다는 것,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수익과 손실 일체를 감당하되, 기업동맹 기선부에 하객荷客 취급의 대리권을 전속專屬시키고, 보수로서 승객 1명당 운임의 이할을 수수료로 기업동맹 기선부에게 교부한다는 것, 기업동맹 기선부는 1년 통산通算 오사카 출범出帆 정기승객 왕복 500명(1일 출항)과 250명(8일과 18일 출항)을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 선 내의 사무에 필요한 한국인 사무장 이하 한국인측의 인사 임면권은 기업동맹 기선부에 일임한다는 것 등이다.

8. 「서약증서」

1929년 1월 29일 고남하·김군보 등이 기업동맹 기선부와 세화항대리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동맹 기선부 본사에 제출한 서류. 필사본. 이 “서약증서”에 의하면, 본사는 속력 약 10리의 1,000톤급 선박 1척 이상으로 제주도-오사카 간을 정기적으로 매월 4항회航廻하고, 제주도-오사카간 운임은 9원 균일로 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리대리부 경영자는 3항해 이후 신임금信任金 일금 200원을 본사에 적립해야 하며, 매 항해 평균 20명 이상의 승객을 확보해야 했다.

9. 「기업동맹 기선부 대리부 규정」

기업동맹 기선부가 제주도에 대리부를 설치하면서 제정한 규정. 필사본. 고순흠이 작성하여(연대보증인 강갑득) 기업동맹 기선부 이사장 松原和夫에게 제출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리부는 총대리부-항만대리부-리대리부의 조직체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대리부는 소요 경비를 자부담으로 하였으며, 승객 선임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10. 『형사사건부』

목포법원지청 검사국이 1930년에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고병희, 강기찬, 고영희, 조대수, 김형수 등의 성명·주소·신분·직업·연령·국적, 구류일, 검사의 예심요청일, 예심 종결 결정일, 예심종결 결정 요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11. 『형사공소사건부』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이 1930년에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고병희, 강기찬, 고영희, 조대수, 김형수 등의 성명·주소·신분·직업·연령·국적, 구류일, 구류 갱신 결정일, 제1심 재판소와 판결일 및 요지, 제2심 공소 신청일과 신청자, 제2심 공판송부일, 종국終局일과 요지, 판결확정일, 집행방면지휘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2. 『사건기록보존부(1930~1931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고병희 외 4명의 사건 표목標目, 종국終局 구별區別, 종국終局 연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3. 『형사사건기록보존부(1930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국이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 고병희 외 4명의 사건 표목標目, 종국終局 구별區別, 종국終局 연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4. 「한국문화부흥후원회 취지서」

1950년 10월 24일 창립책임자 고순흠이 한국문화부흥후원회 창립 취지를 밝힌 문서. 활자본. 한국문화부흥회는 일본 도쿄에 사무실을 두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한국문화부흥후원회는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화된 한국에서 의식주와 위생 자재면으로는 충분한 원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문화재건을 위한 원조는 거의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국제적 기구의 지원 아래 각국 도서 모집, 한국교과서 출판·배부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타 신국가건설에 필요한 문화적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였다. 이 문서에는 한국문화부흥회 후원회 규약과 임원 명단(명예위원단 단장 尾崎行雄, 집행위원장 고순흠)이 첨부되어 있다.

15. 「결의문」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재일본조선건국청년동맹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에 대해 1946년 7월 24일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 KOREA출판주식회사, 조선총화동지회朝鮮總和同志會, 조선구락부, 조선학생동맹, 조선신보사, 조선상공회, 조선문화협회, 조선국제신문사, 조선민간방송협회, 세기신문사, 자유신문사, 조선국제타임스社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문서. 등사본.

16. 「제1차 조사상황보고서」

우국憂國공동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재일조선건국청년동맹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보고서. 등사본. 우국공동위원회의 의장은 고순흙, 서기는 장기수張基洙, 이명주李明柱, 위원은 정태성 鄭泰成 외 20명이었다.

17. 고순흙테러보고서

고순흙이 1947년 3월 3일 재일본 좌익계 청년들이 고순흙을 테러한 사건의 진상을 밝힌 진술서. 필사본.

18. 고순흙이 일본인에게 보낸 정세에 관한 의견서

고순흙이 정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신원미상의 일본인에게 밝힌 문서. 필사본. 고순흙은 이 문서에서 일본의 재군비문제, 태평양동맹, 조선인 및 반공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9. 박렬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요구서

1948년 8월 18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대표 박렬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낸 요구서. 필사본. 박렬은 이 문서에서 대한민국주일대표단을 긴급 설치하고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공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 「창간취지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의 기관지 『평화』 창간 취지를 밝힌 문서. 등사본. 이 문서에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시국의 요청에 순응하여 보도와 문화운동을 일대 쇄신하고, 중앙·지방 일원화와 의사소통, 친선도모 등을 더욱 획득하기 위하여 『평화』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21. 「성명서」 1

1947년 12월 6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 제4회 중앙의사회와 재일본조선거류민단중앙총본부 상임집행위원 명의로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의 정세관을 밝힌 문서. 등사본.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은 이 문서에서 국제연합의 조선독립안을 지지하고 그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공약하였다.

22. 「성명서」 2

1948년 2월 18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중앙총본부 제89회 상임중앙집행위원회 명의로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의 정세관을 밝힌 문서. 활자본. 이 문서에서 재일본조선거류민단중앙총본부는 1948년 2월 17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23. 고순흙이 박기출에게 보낸 편지

1954년 12월 7일 고순흙이 박기출에게 보낸 편지. 필사본. 동서문화협회재단법인 등기를 완료했다는 것과 등기이사의 명단을 알리는 내용이다.

24. 고순흙이 關藤友八에게 보낸 편지(고순흙이 박기출에게 보낸 편지에 붙어 있음)

1954년 12월 5일 고순흙이 박기출에게 보낸 편지. 필사본. 동서문화협회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을 구하는 내용이다.

25. 『자유조선』

동우사에서 발행한 월간 잡지. 편집겸발행인은 정철이다. 제1권 5호(1947. 11)가 현재 남아있는데, 이 호에는 자유조선의 전감 前鑑(고순흙), 국제정국의 추이와 조국의 상태(김정주), 미소 공동회담과 조선 독립(김희명), 조선 농촌의 구조와 그 연구(조영주), 변증법론과 辨證法論過의 지적(小笠原秀實) 등이 게재되어 있다.

26. 『自我聲』

자아성사自我聲社가 발행한 월간 잡지. 김태엽(발행편집겸인쇄인)과 이춘식(자아성사 대표)을 편집동인으로 하여 1926년 3월 20일자로 창간되어 아나키즘을 선전하였다. 창간호와 1926년 5월호가 현존하고 있다. 매월 20일에 일문으로 발간되었는데, 6월호부터는 매월 1일 한국어로 발행할 예정이었다. 신진회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진회는 1926년 1월 16일 이춘식李春植과 김태엽(김뚝빠金突破) 등에 의해 결성되었는데, 해방에서 나아가 생명으로부터 용출하는 샘으로서 새롭게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을 사명이자 목표로 규정하였으며, ① 우리들은 동포의 상호부조 정신과 일치단결의 행동에 의해 절대적 해방을 기한다 ② 우리들은 민족적 특종特種 지위에 입각해서 불합리한 환경을 타파하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우리들은 문맹적 지위로부터 신문화의 창조에 돌진한다 등을 강령으로 설정하였다.